

의안번호	2215926
의 퇴 인	최혁진의원
회 답 일	2026.1.30.
추계번호	26E0096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7조(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)	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대상 확대: (현행) 대손금(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) 등 → (개정안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, 미수금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(이하 “외상매출금등”)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①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외상매출금 등 ② 거래상대방의 파산,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 ③ 회수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났으며 합리적인 회수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등 ④ 그 밖에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상매출금 등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7조(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대상 확대(안 제27조)

- 사업소득 필요경비대상으로 현재는 대손금(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) 등이 포함되고는 있으나,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, 개정안에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함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

- 이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개정안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대상에 포함되는 대손금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이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
- 개정안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①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외상매출금 등 ② 거래상대방의 파산,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 ③ 회수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났으며 합리적인 회수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등 ④ 그 밖에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정보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강민지	박연서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민지	02-6788-4746	min1231@assembly.go.kr